

5월초 공고 예정

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
신청기간 | 2025. 6. 16.(월) ~ 7. 4.(금)

지원대상 남구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 중인 신혼부부

모집세대 500세대

신청방법 온라인 신청(대구광역시 민원·공모홈서비스)

※ 경로 : <https://minwon.daegu.go.kr> 접속 ⇒ 민원신청·발급 ⇒ '신혼부부' 검색

⚠ 아래 세부 조건을 확인하세요!

대상자 아래 세부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
구분	세부조건
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(공고일 기준) 예) 공고일이 5. 10. 경우 2018. 5. 11. 혼인신고자부터 신혼부부 중 1인은 만 45세 이하(공고일 기준) 예) 공고일이 5. 10. 경우 1979. 5. 11. 출생자부터
거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일 현재 구입 주택에 세대원 모두 전입 및 거주
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부합산 *연소득 1억원 이하(세전) *2024년 귀속 소득 기준
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가액(매매계약서 기준)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㎡ 이하 ※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주택 수: 1가구 1주택(대출대상주택) 소유 ※ 분양권,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
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※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출, 일반대출 등의 경우 신청불가

지원제외 대상
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
-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(예: 대부업체, 회사복지기금 등)
- 신청 후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구입한 주택에 주소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

지원기준 대출잔액(1억원 한도)의 3.0% 이내 대출이자 지원(월 25만원 한도/연 최대 300만원)

▶ 연소득 구간에 따라 2.7 ~ 3.0% 차등 적용

부부합산 연소득(세전)	지원금리	지원금 한도액	
8천만원 이하	3.0%	월 25만원	연 300만원
8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2.7%	월 22.5만원	연 270만원

지원금액 (1회차) 지원금액 : 2025년 5, 6월 실제 이자납부액 / 최대 50만원(2개월분)

※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최대 지원금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(원단위 절상)

지급시기 (1회차) 2025. 7. 30.(수) 예정

지원기간 최대 3년간(연 2회 이자지급청구 필수)